

임직원 친인척 현황조사

성 명 :

한국재정정보원 내 친인척 재직 현황(유 , 무)

○ 해당되는 경우 세부 현황

성명 (본인)	관계	촌수	성명 (친인척)	본부 (친인척)	부서 (친인척)	직급 (친인척)

* 6촌이내 친족 및 4촌이내 인척(배우자 포함)

** 촌수는 직계 및 방계를 모두 포함

원내 친인척 관계 임직원 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 내용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상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국재정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 후에도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37조(징계의 사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6.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년 월 일

생월일 : 한국재정정보원

성 명 :

(서명)